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개요

1-1. 블라인드펀드(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출자계획	○ 총 1,8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 수	운용사별 출자금액	펀드별 최소결성금액	출자비율
	3개	600억원	1,200억원	50% 이내
접수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16:00까지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6월 중			
펀드 결성시한	○ 선정일로부터 6개월*			
	* 단,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연장 가능			

1-2. 프로젝트펀드(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내 용			
출자계획	○ 약 700억원에 대하여 운용사 자율제안*			
	*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			
모펀드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50% 이내			
펀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 단,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연장 가능			

1-3. 공통사항

항 목	내 용			
운용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제안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항 목	내 용
출자대상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으로 제안시 벤처투자법 제51조 준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 용 사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출자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성장금융 : www.kgrowth.or.kr (출자사업공고)

2. 투자대상

- 투자대상은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 아래 분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에 일정규모 이상*을 의무투자
(단, ②에 해당하는 투자는 의무투자액의 30% 이내만 허용)

* Min(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모펀드 출자액의 2배 이상 투자)

① 중견기업^{주1,2)} 투자

② 중견기업 관련 투자

-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중견기업(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되는 중소기업 투자의 건
- 중견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식^{주3)}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투자의 건

주1) 중견기업의 정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알기 쉽게 풀어쓴 중견기업 범위 해설’에 따름

주2) 중견기업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견기업 투자로 인정

주3) 중견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건으로 주목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와 사전협의 필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

- 메자닌 투자방식(CB, BW, EB에 한함)으로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의무투자

3. 주요 출자조건

3-1. 블라인드펀드(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세 부 내 용						
최 소 결 성 금 액	○ 최소 1,200억원 이상						
출 자 비 율	○ 약정총액의 50% 이내 * 모펀드 출자비율을 20% 이하로 제안할 경우 성장금융에 사전협의 필요						
운 용 사 최 소 출 자 비 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 공동 운용(Co-GP) 시,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하되,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존 속 기 간	○ 펀드 설립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 * 2년(1년씩 2회) 이내 연장가능						
투 자 기 간	○ 펀드 설립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납 입 방 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관 리 보 수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 적용하여 합산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1,200억원 이하</th> <th>≤ 2,000억원</th> <th>2,000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1.4% 이내</td> <td>1.2% 이내</td> <td>1.0% 이내</td> </tr> </tbody> </table> <p>*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 2년 이후~존속기한 : 투자잔액 기준</p>	1,200억원 이하	≤ 2,000억원	2,000억원 초과	1.4% 이내	1.2% 이내	1.0% 이내
1,200억원 이하	≤ 2,000억원	2,000억원 초과					
1.4% 이내	1.2% 이내	1.0% 이내					
성 과 보 수	○ 기준수익률(IRR 8%)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지급						
운 용 인 력	○ 핵심운용인력은 총 3인 이상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p>*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각각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p> ○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p>※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p> ○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 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별로 각각 1인 지정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						

항 목	세 부 내 용
투 자 기 회 제 공	○ 공동투자를 위한 프로젝트펀드 조성 시 한국성장금융에 투자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관리보수 우대 방식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 ○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책임투자(ESG, 스투어드십코드 등) 관련 운용사 내규, 구축 및 운영 현황, 도입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심사시 반영 -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적절한 지배구조(G) 요소 등을 종합 고려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

3-2. 프로젝트펀드(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세 부 내 용
모 편 드 출 자 비 율	○ 약정총액의 50% 이내에서 개별협의
운 용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운용인력 총 1인 이상 참여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
기 타 사 항	○ 운용사 출자금액, 공동 운용(Co-GP) 여부,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은 펀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개별제안

3-3. 공통사항

항 목	세 부 내 용
출 자 자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의 출자가 책임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타 정책자금과의 매칭시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필요
수 탁 회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항 목	세 부 내 용
회 계 감 사 인	○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 드 전 자 보 고 시 스템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직원인 경우) 또는 문책경고(임원인 경우)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5.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4.3.31.**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6. 선정절차 및 일정 *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제안(구술)심사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24. 5. 30(목)	제안서 접수	10:00~16:00 까지
2024. 6월 중	최종 선정 및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2024. 12월	펀드 결성 완료	선정일로부터 약 6개월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방법 *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출자 설명회

-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15시

- 장소 : 한국성장금융 대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1층)

* 단,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4년 5월 14일(화)까지 하기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참석 인원수, 성함, 직급 등)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출자 설명회 외 별도의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는 추가 개최하지 않을 예정

8.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구조혁신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31, SK증권빌딩 11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64)
E-mail : shk@kgrowth.or.kr

2024년 5월 8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